

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(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)

## 1. 관련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8.6.)
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4978호(2021.8.6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,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,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 3단계)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○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(7.1.~)이후,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·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
### <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>

#### <모임·행사>

##### ■ 사적모임 예외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사적모임 예외	▲ 해당없음	▲ 동거가족/돌봄/임종 ▲ 스포츠영업시설 ▲ 직계가족 ▲ 돌잔치 ▲ 예방접종완료자	▲ 동거가족/돌봄/임종 ▲ 스포츠영업시설 ▲ 상견례(8인) ▲ 돌잔치(16인) ▲ 예방접종완료자	▲ 동거가족/돌봄/임종

##### ■ 돌잔치(전문점→‘돌잔치’)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돌잔치	▲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㎡당 1명 ▲ 최대 16명까지 면적기준 미적용	▲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+ 4㎡당 1명	▲ 16인까지 허용	▲ 사적모임 제한에 의함

■ (행사) 4단계: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

<b>&lt;다중이용시설&gt;</b>			
<b>다중이용시설</b>	<b>3단계</b>	<b>4단계</b>	<b>비고</b>
<b>1그룹 시설* 전체</b>	중전과 같음	▲ 집합금지	*유흥시설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
<b>결혼식장</b>	▲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+ 웨딩홀별 4㎡당 1명	▲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+ 웨딩홀별 4㎡당 1명	3~4단계 동일 조치
<b>장례식장</b>	▲ 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 1명	▲ 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 1명	3~4단계 동일 조치
<b>공연장 (정규공연시설 외 시설)</b>	▲ (관객수) 6㎡당1명+ 최대 2,000명 ▲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(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용)	▲ 공연개최 금지	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대로 운영
<b>실외체육시설</b>	▲ 샤워실 운영금지	▲ 샤워실 운영금지	-
<b>전시회·박람회</b>	▲ 부스내 상주인력 최대 2명 (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) ▲ 예약제 운영(의무)	▲ 부스내 상주인력 최대 2명 (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) ▲ 예약제 운영(의무)	-
<b>국제회의·학술행사 (학술행사)</b>	▲ 50인 미만 참석 가능 (동선 분리되는 공간별)	▲ 50인 미만 참석 가능 (인원나누기 금지)	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는 기본방역수칙대로 운영
<b>이미용업</b>	중전과 같음	▲ 운영시간 제한 삭제	3그룹 → 기타그룹
<b>종교시설</b>	▲ (2단계) 전체 수용인원의 30%(두 칸 띄우기) ▲ (3단계) 전체 수용인원의 20%(네 칸 띄우기)	▲ 전체 수용인원 기준 -100명 초과: 10%(최대 99명) -100명 이하: 최대 10명	비대면 예배운영 관련 사항은 현행과 같음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: 2021. 8. 9.(월) 0시 ~ 2021. 8. 22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\*

\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단계

- 수도권: 거리두기 4단계
- 수도권 외 지역: 거리두기 3단계

※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
 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<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>

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※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

### 1) 모임·행사
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  - (3단계)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,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·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
    - ↳ 모임·행사 인원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(4단계 금지)
  - (4단계) 사적 모임 5명(18시~익일 05시 3명)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금지
    - <50명 이상(3단계) 금지(4단계)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>

법인·단체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행사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, 기념식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'기본방역수칙'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 적용

- (시험1~4단계)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\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1: 수도권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붙임2: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### 2) 직장근무(유연근무 등 활성화)

- 3단계: 50명 이상 사업장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- 4단계: 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
3. 이에, 각 기관에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연장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(회원사) 등에 방역조치 사항(붙임 참조)을 상세히 안내·지도하여 주시고,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(붙임1) 수도권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
